노후거점산업단지의 활력증진 및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(구자근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호 368

발의연월일: 2024. 6. 12.

발 의 자: 구자근 · 김승수 · 유상범

김석기 · 박준태 · 조경태

김도읍 • 권영세 • 이철규

인요한 · 임이자 · 김성원

강대식 • 서범수 • 박덕흠

곽규택 · 강명구 의원

(179]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에 따르면 국가는 노후거점산업단지의 활력증진과 경쟁력강화에 대한 공공의 역할 및 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자금지원, 조세 및부담금의 감면 등 지원 및 규제특례를 시행할 수 있음.

그런데 국가예산의 한정된 범위 내에서 각 산업단지가 필요로 하는 유지보수사업을 모두 지원할 수도 없고 산업단지로서 착공 후 20년 이상이 경과한 산업단지 중 주요 거점 역할을 하는 산단의 경우 긴급한 유지보수가 요구될 상황에 즉각적인 대응도 어려워 오히려 산단 경쟁력을 저하 시킨다는 지적이 있음.

이에 '노후거점산업단지발전기금'을 조성할 수 있는 근거를 법에 명

시하여 선제적으로 기반시설 신설, 유지, 보수 등의 사업에 투자를 할수 있도록 하여 산업단지 경쟁력 강화에 기여코자 하는 것임(안 제26조 등).

참고사항

이 법률안은 구자근의원이 대표발의한 「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 안」(의안번호 제369호)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 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 어야 할 것임.

법률 제 호

노후거점산업단지의 활력증진 및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노후거점산업단지의 활력증진 및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6장(제26조부터 제26조의3)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6장 노후거점산업단지발전기금

제26조(노후거점산업단지발전기금의 설치 등)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은 노후거점산업단지의 원활한 조성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 하여 노후거점산업단지발전기금(이하 "기금"이라 한다)을 설치한다.

- 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.
- 1. 정부로부터의 출연금
- 2. 정부 외의 자가 출연 또는 기부하는 현금, 물품, 그 밖의 재산
- 3. 기금의 운용 수입금
- 4. 다른 회계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및 예수금
- 5.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

제26조의2(기금의 용도)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.

- 1. 노후거점산업단지 개발사업을 위한 자금 지원
- 2. 경쟁력강화 전략계획 수립 등을 위한 자금 지원
- 3. 노후거점산업단지의 기반시설 긴급유지보수비의 지원
- 4. 제13조에 따른 경쟁력강화사업의 지원
- 5. 노후거점산업단지개발사업 및 재생사업을 위한 조사 · 연구비
- 6. 기금의 조성 · 운용 및 관리를 위한 경비
- 7. 그 밖에 설치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제26조의3(기금의 관리·운용) ① 기금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관리 ·운용한다.
 -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기금의 관리·운용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에 위탁할 수 있다.
 - ③ 그 밖에 기금의 관리 및 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u><신 설></u>	제6장 노후거점산업단지발전기금
<신 설>	제26조(노후거점산업단지발전기
	금의 설치 등) ① 산업통상자
	원부장관은 노후거점산업단지
	의 원활한 조성에 필요한 재원
	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후거점
	산업단지발전기금(이하 "기금"
	이라 한다)을 설치한다.
	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
	으로 조성한다.
	1. 정부로부터의 출연금
	2. 정부 외의 자가 출연 또는
	기부하는 현금, 물품, 그 밖의
	<u>재산</u>
	3. 기금의 운용 수입금
	4. 다른 회계 또는 다른 기금으
	로부터의 전입금 및 예수금
	5.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
	는 수입금
<u> <신 설></u>	제26조의2(기금의 용도) 기금은
	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.
	1. 노후거점산업단지 개발사업
	을 위한 자금 지원

<신 설>

- 2. 경쟁력강화 전략계획 수립등을 위한 자금 지원
- 3. 노후거점산업단지의 기반시 설 긴급유지보수비의 지원
- 4. 제13조에 따른 경쟁력강화사업의 지원
- 5. 노후거점산업단지개발사업 및 재생사업을 위한 조사·연 구비
- 6. 기금의 조성·운용 및 관리 를 위한 경비
- 7. 그 밖에 설치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
- 제26조의3(기금의 관리·운용) ① 기금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관리·운용한다.
 -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기금 의 관리·운용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에 위탁할 수 있다.
 - ③ 그 밖에 기금의 관리 및 운 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 령으로 정한다.